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3 | 2025.04.28 (2025.04.21~2025.04.2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21~2025.04.27)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와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를 추가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등의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대하여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5인)**」 ,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 <행안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예결위> 등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며, <과방위>에서는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7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공정거래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원자력안전위원회)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4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5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5
-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특허청) 1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 1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1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19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1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1인) 2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의원 등 10인) 2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의원 등 13인) 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1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2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22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3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의원 등 10인)	25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5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26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6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7
•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5인)	2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의원 등 12인)	28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의원 등 11인)	2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2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9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3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의원 등 15인)	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	3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3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의원 등 10인)	32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33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의원 등 12인)	3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바이오/헬스케어] 병원-스타트업 연계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공동연구 프로젝트’ 공고 안내
- [바이오/헬스케어] 합성생물학 육성법 공포(2025. 4. 22.) 안내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운영 등 첨단바이오 분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2 (2025년 4월 4째주)
- **[방송통신(TMT)]** 게임 내 다크패턴에 관한 글로벌 규제 동향
- **[건설/부동산]** 해외 플랜트공사 턴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급한 설비 자체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함으로써 거액의 성능보장배상금,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용된 사건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 투자 확대를 통한 애니메이션 산업 활력 제고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활용한 문화 상품 시장 활성화 - 중화권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해외 진출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외연 확대 - 전문인력 양성 통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2025-04-24
---------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움직이는 이미지를 영상화하는 애니메이션은 영화와 게임, 광고 등 다양한 영상 산업의 기초 기술이자 핵심 분야임.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영화,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등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유형의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애니메이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확산 등 미디어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애니메이션에 편중된 제작·투자 구조, 텔레비전 방송 위주의 유통 체계, 열악한 제작 환경 등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와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음

①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
-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제작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마련

②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짧은 영상(숏폼)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 유통 다변화를 추진
-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파생작(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해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제고

③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활용한 문화 상품 시장 활성화

- 애니메이션 캐릭터뿐만 아니라 최근 등장한 가상 인간,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을 지원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산업별 정보 제공과 사업화 교육과정을 개설해 업계 역량을 강화
- 특히,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중견기업 간 사업 연계를 지원해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

④ 중화권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해외 진출

- 시장 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에 한국공동관을 설치, 국내 애니메이션업체의 참가를 지원해 전략적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
-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과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 소관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42개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소)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

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외연 확대

- 영상 콘텐츠의 혁신을 이끌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
-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

⑥ 전문인력 양성 통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

- 웹툰, 웹소설 등 다른 분야 콘텐츠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
- 대학, 산하기관과 연계해 영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영상콘텐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CP 우수기업 지정제(AAA, AA A)로 개편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 개선 -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제 폐지	2025-04-23
----------------	--	-------------------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우수기업 지정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내용은 기업의 CP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음

먼저,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의 상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하였음. 다만,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2026년까지는 유지됨

* AAA : 90~100미만, AA : 80~90미만, A : 70~80미만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됨.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함.(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음.)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함임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여 앞으로는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됨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 유통 · 대리점 · 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평가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됨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2 시행

수의계약의 경우 당초 경쟁입찰과의 형평성을 위해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시 설계도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까지 실시설계서 작성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게 되므로,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괄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	---------------	---------------

방송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절차를 정하고, 여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자본금의 적용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	-------------------	---------------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2047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절차, 지정된 유망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지원의 내용, 생명공학 관련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내용, 생명공학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및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7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조건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에 한정하여 보증하던 것을,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문화상품 제작·유통 등의 단계까지로 보증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상품의 기획·제작·유통은 물론 해외수출 등을 포함한 각 단계 전반에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며 영세한 콘텐츠 기업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493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문화산업보증의 구체적인 종류로 종전의 문화산업완성보증 외에 문화상품의 수출 계약 체결 등의 경우에 필요한 대출 등의 자금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문화산업수출보증과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보증에 관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필요한 대출 등의 자금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문화산업특화보증 등을 정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이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01 시행 예정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종전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던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되, 도시철도 등 일반적인 전기·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일부 제품만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 시뿐만 아니라 2차 이상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31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의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종전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선의 장애(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범위에서 일정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한정하여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533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1. ~2025.06.0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선정제로 전환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그 외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법체계를 개선 및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폐지 (안 제28조)

- 규제개혁위원회 인증규제 정비('22.12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선정 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리자 직무대행 기간 개선 (안 제10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함

③ 하위법령 위임 체계 정비 (안 제22조, 제 34조)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제22조제3항)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교육·훈련 의무(제34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전화: 044-202-4859, 팩스: 044-202-6209)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24. ~2025.06.04.
---------	--------------------------	-----------------------------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 (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 ②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 (안 제19조의3)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5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23.
~2025.06.0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추진 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계 재생에너지전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 발전설비용량 기준 폐지 (안 제19조제1항제4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전화: 044-203-3916, 팩스: 044-203-4758)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24.
~2025.06.13.

공동집배송센터의 주요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부 부대시설의 목적 외 과다설치 등을 방지 하여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동집배송센터 주요시설 중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에 제외되는 공장을 명확화
 - 제조 공장의 일부로 사용되는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이 주요시설에 해당된다고 오해석 하는 사례가 있어 시설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에 해당되는 공장 단서에 제조 공장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는 단서를 추가함

② 공동집배송센터 집배송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오피스텔은 공동집배송센터 종사자 편의를 위해서만 설치토록 규정

- 공동집배송센터의 부대시설로 설치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배송기능과 관련없이 과다 설치될 우려가 있어 개선 필요성 제기
- 공동집배송센터 부대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단서를 추가하여 오피스텔의 경우 종사자 위한 용도로만 설치하도록 개정

③ 「유통산업발전법」개정('24.9)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관여 최소화, 지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일괄정비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필요
- 시·도지사 등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를 '통보'로 개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전화: 044-203-4389, 팩스: 044-203-4725\)](tel:044-203-4389)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23.
~2025.06.02.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대상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절차에 영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출석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근거 규정 정비 (안 제29조)
- ②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상담·민사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 (안 제9조의9)
- ③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출석통지 기간을 양 당사자 동의 하에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영상조정제도를 도입 (안 제22조)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특허청 공무원을 기존의 간사 외 서기도 임명토록 개선 (안 제24조)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전화: 044-204-7711, 팩스: 044-204-7719\)](tel:044-204-77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25.
~2025.06.05.

식품접객영업소는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로서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14, 팩스: 043-719-200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2인)

2025-04-22 발의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기여분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이 기발의되었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을 해소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발의된 의안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1008조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04-22 발의

현행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결정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편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사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편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음. 하루속히 이사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여 자본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여야 함. 2025년 3월 13일,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최종 공포되지 못하였음.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였고,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또한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음 (안 제382조의3)**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2025-04-22 발의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활성화하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2025-04-23 발의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제2호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5-04-25 발의

현행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각·청각·발달 등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2025-04-25 발의

현행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각·청각·발달 등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2025-04-25 발의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2025-04-25 발의

현재 국내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재료, 설비·용역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유통마진에 기반하는 성격이 강함

그러나 이와 같은 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모델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져 가맹사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정작 현행법에서는 필수물품의 정의 등 구체적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가맹사업거래 시장의 온라인 모바일 전환에도 불구하고 영업지역의 정의에는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 온라인몰 판매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분쟁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3호 신설, 제12조의8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5-04-21 발의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5-04-21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2025-04-23 발의

현행법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관세법」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

2025-04-23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 등과 더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5-04-23 발의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특히, 서비스산업 지원에 대하여 「의료법」, 「관광진흥법」, 「금융지주회사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5-04-24 발의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써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 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5-04-24 발의

종업원소유제도는 종업원들이 자사 주식을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윤공유와 참여경영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을 말함. 이는 자본 소유의 편중 해소와 노동 소외 문제를 직접적으로 시정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자산 증대와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한국형 종업원소유제도로써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우리사주 지분율이 미미한 수준이고 보유기간도 단기에 그치는 등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미국, 영국과 달리 주주들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특별한 이익 동기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CEO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 매각, 가족 승계 등이 주요 승계방안으로 거론되나,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의 보유지분 종업원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바람직한 기업 승계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이는 고용유지, 참여를 통한 혁신, 불평등 완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04-24 발의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나,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임에 반해,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이점이 있음

또한 배당소득은 법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물로서 법인세 납부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다 시금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공제(「소득세법」 제56조)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법인들의 배당성향은 평균적으로 26%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구조와 지주회사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음. 이들은 일반주주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급여수령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결국 저배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결국 투자자 역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 (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2025-04-24 발의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줄속 도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그런데 국회와 학계에서 이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025-04-22 발의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2025-04-23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법인의 기부 행위의 경우 과도한 기부금 모집과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여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의 고향사랑기금의 재원 확보 측면에서 시·도의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시·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설치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4-22 제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소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5-04-22 발의

현행법은 해양이용·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사업을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의 거쳐야 하고, 바다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바다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함

한편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하려는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또는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로 인하여 골재채취 단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 단지의 지정 시에 한 차례의 해양영향평가만을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후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의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양이용협의가 아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골재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1호 삭제 및 제13조제1항제1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5인)

2025-04-21 발의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 균형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산업구조의 급변 속에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특히, 국가 경제의 중심축인 인공지능(AI) 기술, 미래자동차,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은 대부분 그 근거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 유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은 고령화, 지역 소멸, 경제 침체 등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국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의 융합과, 청년 인재 유입 등 산업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활성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더불어, 글로벌 친환경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과 같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함.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RE100 기반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통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융합되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인재 유입,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2025-04-23 발의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기업본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기업본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6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2025-04-21 발의

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체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을 식자재로 사용하여도 표시의무가 없어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알 수 가 없는 상황임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또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6)

이에 더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같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5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

2025-04-22 발의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채용서류의 반환을 비롯해 채용과정상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채용에 임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에서의 정보 불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구인자가 현행법상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은 미비한 경우가 있어 현행법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직상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5-04-23 발의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62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5-04-24 발의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4조)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5인)

2025-04-24 발의

현행법은 일정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3회 연속 기준 미달 시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른 고용 기준이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로 한정되어 있어, 남녀 간 임금 격차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주가 시행계획 수립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시행계획에 노동시장 내 주요한 성별격차인 남녀 임원·관리자 비율,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육아휴직 비율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은 3회 연속 기준 미달이더라도 사업주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 공표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표 제외 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현행법 적용 대상 사업주의 남녀 고용비율과 남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포함하여 시행계획 수립·제출 대상 사업주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별 격차 관련 자료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남녀 근로자·관리자·임원의 고용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포함하며, 3회 연속 기준 미달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예외 규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 및 예외 사유의 법률 규정을 통해 실질적 고용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2인)

2025-04-21 제출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124조제7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2025-04-21 발의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2025-04-22 발의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53개 단지 110,371세대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2개 단지 및 경기도 성남시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2025-04-2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고,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자연·인문·사회·환경 등 일반 현황과 토지의 이용 현황, 지원기반시설 현황 등 다양한 사항을 기초조사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업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만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비도시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익계약으로 대부·사용·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업지역 기초조사가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업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제3항, 제54조제4항 신설, 제67조제5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2025-04-23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사례와 같이 각종 재난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한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드론의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 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문을 두어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정무위	전체회의	4/28(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법안 상정, 현안질의
	예결산소위	4/28(월) 13:00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금융위 소관)
기재위	전체회의	4/30(수) 10:00	- 현안질의, 국감 결과보고서 의결
과방위	전체회의	4/30(수) 10:00	-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4/29(화) 09:30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체회의	4/29(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토위	전체회의	4/29(화) 14:00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예결위	전체회의	4/28(월) 10:00	-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종합정책질의
	전체회의	4/29(화) 10:00	- 종합정책질의
	소위원회	4/30(수) 오후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28(월) 10:00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조정식·정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8(월) 11:00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박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4/28(월) 14:0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복기왕·황운하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4/29(화) 14:00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5차회의] AI 인재 양성 어 떻게 할 것인가? :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고동진·김은혜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9(화) 14:00	국방우주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서천호·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4/30(수) 10:00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 투명한 임금 공시 로 만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	신장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5/1(목) 10:00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	박수현·김윤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4/28(월)	「Data+」 제7호(2025-7호) 발간	국회도서관	
	4/2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0호(2025-7호) 발간		
	4/30(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8호(2025-8호) 발간		
	4/30(수)	「금주의 서평」 제726호(2025-17호) 발간		
	4/30(수)	「Data&Law」 제28호(2025-3호) 발간		
	4/29(화)	「NABO Focus」 제105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69호(2025-6호)	국회도서관	
	4/23(수)	「금주의 서평」 제725호(2025-16호)		
	4/22(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제13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21~2025.04.2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22(화)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4/23(수)	바이오/헬스케어	병원-스타트업 연계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공동연구 프로젝트’ 공고 안내
4/24(목)	바이오/헬스케어	합성생물학 육성법 공포(2025. 4. 22.) 안내 -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 운영 등 첨단바이오 분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4/24(목)	소송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산학협력단 외에 연구책임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25(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2 (2025년 4월 4째주)
4/25(금)	방송통신(TMT)	게임 내 다크패턴에 관한 글로벌 규제 동향
4/25(금)	건설/부동산	해외 플랜트공사 턴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급한 설비 자체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함으로써 거액의 성능보장배상금,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용된 사건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